

19세기 후반 濟州 戶籍中草에 등재된 戶의 경제적 성격*

－ 濟州島 大靜縣 沙溪里의 사례를 중심으로 －

허 원 영**

目 次

I. 서론	III. 戶의 경제적 성격
II. 자료의 검토 및 재구성	1. 토지소유 현황을 통해 본 元戶와 경제력의 관계
1. 자료의 검토	2. 戶主와의 관계에 따른 토지소유 현황 비교
2. 자료의 재구성	3. 元戶 抄定에 따른 토지소유 현황의 변동
	IV. 결론

요약

이 연구는 1894년 濟州 大靜縣 沙溪里의 戶籍中草에 등재된 戶의 성격을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1920년경에 작성된 『沙溪里民籍簿』와 『沙溪里地稅名寄帳』을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1894년 사계리 호적중초에 등재된 호들의 경제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호적중초에 원호로 등재된 가호들은 그렇지 못한 가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호적중초에 등재된 다수의 원호들은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로 등재된 것이었으며, 이 경우 경제적 의존에 근거한 수직적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소유한 가호들이 혈연을 매개로 결합한 형태를 보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중 일부를 다시 정리한 것이다.

** 장서각 고문서연구실 전임연구원

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셋째,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로 편제되어 등재되는 경우에 있어, 편제는 경제력을 균등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19세기 후반 제주지역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부세수취와 그에 대한 민과 관의 상호작용에 의한 역사적 결과물이었다.

주제어: 사계리호적중초, 사계리민적부, 사계리지세명기장, 호원호

K C I

I. 서론

현재 제주지역에는 178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의 시기에 걸친 里別 戶籍中草가 다수 현전한다.¹⁾ 이 호적중초들은 제주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호적중초라는 자료적 특성뿐 아니라, 식년별 연속성이 매우 뛰어난 자료로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글은 이 가운데 1894년 濟州 大靜縣 沙溪里의 호적중초를 대상으로 호적중초에 등재된 元戶의 경제적 성격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원호의 경제적 성격을 세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호적중초의 등재여부에 따라 家戶간에 경제력의 차이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호적중초 상 하나의 원호를 구성한 가호들에 있어 戶主를 배출한 가호와 그렇지 않은 가호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어떠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이상의 가호가 호적중초 상 하나의 원호를 구성함으로써, 원호를 단위로 했을 때 경제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것이다.²⁾

1894년의 사계리 호적중초만으로는 이상의 문제들을 검토하기에 부족하다.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호적에 등재된 가호뿐 아니라 누락된 가호를 포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호적 등재 이전의 자연 상태의 가호의 모습과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들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20년 무렵에 만들어진 사계리의 民籍簿와 地稅名寄帳을 적극 활용하였다.³⁾ 1/4세기라는 시간적 격차와 해당 기간 한국 사회의 격변을 고려할 때 이들 자료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⁴⁾ 그러나

1) 이들은 제주도의 16개 洞里에 걸쳐 있으며, 수도 400책을 훨씬 넘어서는데, 그 대부분은 옛 大靜縣에 속한 동리의 호적중초이다. 그 분포와 현황에 대해서는 김동진(『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이 자세히 소개한 바 있다.

2) 조선시대 호적에 등재된 호의 성격에 대한 논의는 진작부터 있어왔고, 현 시점에서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호의 성격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심재우(『조선후기 사회변동과 호적대장 연구의 과제』, 『역사와현실』 62, 한국역사연구회, 2006)의 정리를 참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세 측면 역시 기존의 논의에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던 주제들이다.

3) 호적중초를 비롯하여 민적부와 지세명기장 모두는 현재 사계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4) 1894년에서 1920년경의 시기에 한국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제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특히 사계리는 사계포라는 작은 포구가 존재한 해안마을로 일제시기에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1894년의 호적중초와 1920년경의 민적부 및 지세명기장을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은 일정한 자료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계리의 주요한 경제활동은 농업이었으며, 이후에 살피게 되겠지만 1894년 호적중초와 1920년경의 민적부의 등재인원에 있어 매우 높은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1/4세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자료들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한다는 점에 있어 이와 같은 접근은 유용성을 지니며, 동시에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기도 하다.

II. 자료의 검토 및 재구성

1. 자료의 검토

1)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의 표제는 “光緒二十年正月日 甲午式 沙溪里 戶口中草”이다. 원호는 총 103호로 1통 1호에서 20통 8호까지 편제되었다. 구수는 都已上 기록에 따르면 남정 424구, 여정 515구로 전체 939구이다.⁵⁾ 평균 호당구수는 9.12구로 상당히 높다. 호별 구수는 12통 5호와 20통 6호의 남성 호주 단독호에서 1통 1호의 38구까지 나타난다. <표 1>은 각 원호의 구수를 기준으로 호와 구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의 戶內口數別 戶口분포

戶內口數	戶	口
1구	2(1.94%)	2(0.21%)
2~5구	30(29.13%)	123(13.11%)
6~10구	42(40.78%)	313(33.37%)
11~15구	17(16.50%)	215(22.92%)
16~20구	5(4.85%)	87(9.28%)
21~30구	5(4.85%)	127(13.54%)
31구 이상	2(1.94%)	71(7.57%)
합	103(100%)	938(100%)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 가운데 5구 이하로 구성된 호들은 32호, 30% 정도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6구 이상으로 구성되었으며, 11구 이상으로 이루어진 원

을 통한 일정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다.

5) 그러나 실제 호별로 기록된 구수를 합하면 938구로 1구의 오차를 보인다.

호도 30여 호에 달한다. 그 결과 평균 호당구수는 9.11구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다. 이와 같은 원호의 구수 분포는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를 구성하는 당시의 정황을 드러낸다. 둘 이상의 가호가 결합한 원호의 구성형태는 19세기 후반 제주지역 호적중초에 나타나 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⁶⁾

규모가 큰 호들이 다수 존재했지만, 호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借入만이 30여 구 정도 확인될 뿐 노비나 雇工 등은 발견되지 않는다.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서 하나의 원호를 구성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호주와 혈연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2) 『沙溪里民籍簿』

『사계리민적부』는 최초 작성 시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사계리민적부』 최초의 除籍 기록은 1921년 2월 21일, 253번지 이창수의 사망기록이다. 그리고 등재인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출생한 사람은 1933년 7월 11일을 생년월일로 하는 2359번지 이성기이다. 결국 『사계리민적부』는 늦어도 1920년경에는 작성되었으며, 이후 1933년까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

『사계리민적부』는 民籍簿用紙에 작성되었으며, 호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별로 기록하였다. 우선 ‘本籍’란에는 해당 호의 본적지, 즉 최초 작성 시점의 주소가 기록되었다. 호주에 대한 기록항목은 본과 前戶主, 호주가 된 사유와 시기, 부모의 성명 및 관계, 호주의 성명과 생년월일이다. 호주가 아닌 구성원의 기록항목은 호주와의 관계, 부모의 성명 및 관계, 본과 성명, 생년월일이다. 그리고 해당 구성원의 위편에 위치한 ‘事由’란에는 이거나 사망 혹은 入籍 등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총 두 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 『사계리민적부』 전체에서 확인되는 호수는 316호이다.

6) 이와 같은 현상은 제주지역의 특수한 가족제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특징적인 제주의 가족제도로는 장남까지도 혼인 후에서 분가하여 독립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철저한 父子分戶, 부자간에 한 울타리 내에서 동거하면서도 가옥을 달리하여 거주를 나누고 생계를 달리하는 분가관습, 실제의 생계와 거주는 분리되었으면서도 公簿에는 하나의 가족으로 등재하여 부조나 부역을 함께 하는 이중적 가족의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재석(『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66)과 현용준(『家族』,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查報告書』, 제주도, 1973) 및 이창기(『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의 글을 참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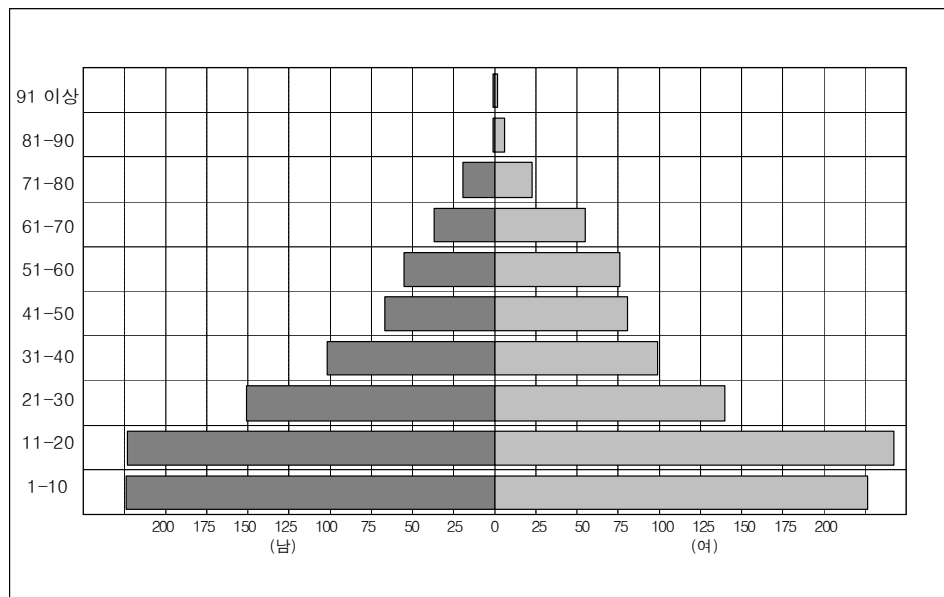
반면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를 비롯한 19세기 후반 제주도의 호적중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호의 가족구성은 울타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19세기 후반 호적중초 등재 원호의 이와 같은 가족구성은 18세기 말 부부가족 중심의 등재에서 변화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광무연간을 거치면서 위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재되어 간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해당 기간에 진행된 제주지역의 부세수취, 특히 환정의 운영과 긴밀히 관련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拙稿(『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를 참고할 수 있다.

7) 이 민적부 이후에는 戶籍簿가 작성되어 사용되었다. 이후 시기의 『사계리호적부』 역시 사계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표 2> 『沙溪里民籍簿』 등재 인구의 性別·年齡別 분포(1921년 기준)

연령대	남	여	합	성비
1~10	224	227	451	98.7
11~20	223	243	466	91.8
21~30	151	140	291	107.9
31~40	102	99	201	103.0
41~50	67	81	148	82.7
51~60	55	76	131	72.4
61~70	37	55	92	67.3
71~80	19	23	42	82.6
81~90	1	6	7	16.7
91세 이상	1	2	3	50.0
합	880	952	1,832	92.4

<그림 1> 『沙溪里民籍簿』 등재 인구의 性別·年齡別 분포(1921년 기준)



구수의 파악은 자료의 속성상 일정한 조정이 필요하다. 1921년을 기준으로 인구를 재구성해 보면 남성 880명, 여성 952명으로 전체 1,832명이 당시 사계리에 생존해 있었다.⁸⁾ 이

들의 성비는 92.4이다. 『사계리민적부』 역시 모든 호구를 누락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니었다. 앞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전히 10세 이하 연령층의 누락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형태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호구조사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증가했다고 판단된다.

『사계리민적부』는 각 개인의 성명과 부모성명 및 출생 시기를 수록하였다. 호주의 경우는 이 외에도 본적과 전호주에 대한 기록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개인별 기록을 통해 20년 이상 차이나는 1894년 호적중초와의 비교를 통한 호구별 내용 분석이 가능하다.

3) 『沙溪里地稅名寄帳』

『사계리지세명기장』은 사계리 거주 토지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지세의 내역을 기록한 장부이다. 두 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일부 훼손이 있으나 상태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규격화된 지세명기장 용지에 작성되었으며, 納稅者 별로 기록하였다. 가장 우측에는 納稅管理人和 납세자의 주소, 성명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계리지세명기장』은 납세관리인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며, 납세자만을 수록하였다. 납세자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筆地별로 토지의 소재 里名과 地番, 地目, 地積, 地價, 結數, 稅額, 분기별 納稅額, 摘要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사계리지세명기장』은 작성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우선 표지의 뒷면에 “大正六年拾月九日”이라고 날인하였다. 그리고 각 개인별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大正七年七月一日現在”라고 날인한 후 개인별 합계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사계리지세명기장』의 작성 시기는 1918년에서 1919년임을 알 수 있다.

『사계리지세명기장』은 사계리에 적을 둔 토지소유자들에 국한하여 토지소유자 별로 토지소유 현황을 기록하였다. 확인 가능한 전체 토지소유자는 380명이다. 이 중 6명의 기록은 훼손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전체를 확인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사계리”인 경우도 1건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계리지세명기장』을 통해 명확한 분석이 가능한 개인 토지소유자 수는 373명이다.

각각의 토지소유 현황은 필지별로 수록되었다. 우선 해당 필지가 소재한 里名을 기록하였는데, “사계리”를 포함하는 374명이 소유한 토지는 2,236개 필지이다. 이 중 52개 필지만이 德修里나 和順里 등 인근 동리에 소재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계리에 속한 토지였다.

소재 리명에 이어 해당 필지의 地番과 地目, 地積, 地價를 기록하였다. 지적은 坪, 지가는 圓을 단위로 하였다. 각 필지별 기재가 끝나면 마지막 행에 “大正七年七月一日現在”라는 날인 후 토지소유자별로 전체 현황을 집계하였다. 전체 현황은 전체 지적과 지가의 합,

8) 이 수치는 전체 등재 인원에서 1922년 이후 출생자와 성별 및 출생년도 기록 미상자 36명을 제외한 수치이다.

結數, 세액으로 나타내었다. 다시 세액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납부할 금액을 기록한 후, 마지막으로 전체 필지수를 기록하였다.

『사계리지세명기장』의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당시 사계리의 토지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표 3>은 『사계리지세명기장』에 기재된 각 필지의 지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⁹⁾

<표 3> 『沙溪里地稅名寄帳』을 통해 본 沙溪里 소재 토지의 地目別 현황

분류	田	畓	垆	雜種地	池沼	총합
지적(坪)	1,125,719 (85.9%)	38,830 (3.0%)	48,874 (3.7%)	93,954 (7.2%)	2,472 (0.2%)	1,309,849 (100%)
지가(圓)	6,514 (63.4%)	1,302 (12.7%)	2,320 (22.6%)	137 (1.3%)	3 (0.0%)	10,276 (100%)
필지수	1,578 (70.6%)	189 (8.5%)	325 (14.5%)	137 (6.1%)	7 (0.3%)	2,236 (100%)

사계리의 토지는 田이 86%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畓은 전체의 3%, 垆地는 전체의 3.7% 정도 수치를 각각 보여준다. 이 중 대지는 325개 필지로, 필지당 평균 지적은 150평이다. 대지는 모두 사계리에 소재한다.

지가로 환산했을 때의 비율은 면적에 비해 전이 63.4%로 감소한 반면 답은 12.7%로 4배 이상, 대는 22.6%로 6배 정도 증가한다. 이것은 전에 비해 답은 4배, 대는 6배 이상 지가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2. 자료의 재구성

『사계리지세명기장』은 근대 토지제도에 입각하여 개인별 토지소유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이다. 호적이 만들어진 당대의 호별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사계리지세명기장』은 상당히 매력적인 자료임에 틀림없다. 1894년 호적중초를 원호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삼은 것도 결국은 신호적법 이전의 것으로는 『사계리지세명기장』에 가장 근접한 호적중초이기 때문이다.

9) 이것은 소유자가 “사계리”인 경우를 포함한 374명의 2,236개 필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소재지가 사계리가 아닌 경우도 계산에 포함하였다. 사계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사계리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를 상쇄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의 일부 또는 전체가 누락된 6명의 기록은 제외하였다. 또한 『사계리지세명기장』에는 산야나 도로와 같은 지목의 토지는 수록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계리의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는 데에는 이상으로도 충분하다.

『사계리지세명기장』의 내용을 직접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의 원호에 따라 재배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세명기장에는 단지 토지소유자인 납세자의 성명만이 기록되었을 따름이다. 1894년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의 경제력을 재구성함에 있어 1920년경의 납세자 성명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사계리민적부』는 『사계리지세명기장』의 내용을 호적중초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재구성을 위해서는 두 단계가 요청된다. 우선 『사계리지세명기장』의 토지소유 현황을 『사계리민적부』의 호별 기록에 따라 재구성하여 민적부 호별 토지소유 현황을 산출한다. 이어서 이렇게 재구성한 자료를 다시 1894년 호적중초의 기록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1894년 호적중초 원호의 토지소유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

1) 『沙溪里民籍簿』 등재 戶別 토지소유 현황

『사계리지세명기장』과 『사계리민적부』는 작성시기가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사계리지세명기장』에 기록된 납세자 성명만으로도 『사계리민적부』의 호 별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외에 납세자의 소유 토지 중 垆地의 지번과 『사계리민적부』 상의 번지도 일정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재구성의 예로 『사계리민적부』 내에 2263번지 구운문호를 살펴본다. 『사계리민적부』에 등재된 구운문호는 구운문 부부와 장남가족이 하나의 호를 구성하였고, 장남가족은 부부와 2남 2녀로 확인된다. 즉 구운문의 호는 호주부부와 장남부부, 그리고 장남의 자녀인 4명의 손자녀로 이루어졌다.

『사계리지세명기장』을 살펴보면 이들 8명의 구성원 중 3명에 대해서 토지소유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호주인 구운문이 대지 2필지(307평), 전 5필지(3,566평), 잡종지 1필지(1,085평)를 소유하였다. 그리고 장남인 구자원 앞으로 대 1필지(180평), 답 1필지(162평), 전 7필지(4,408평), 잡종지 1필지(569평)가 등재되었다. 마지막으로 장남인 구자원의 처 강열부에 계도 대 1필지(180평)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운문호의 토지소유 현황은 호주 자신과 자, 子婦 3인의 토지소유 현황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납세자수는 3명, 전체 소유 토지 면적은 1만 457평이며, 소유한 대지 필지수는 4, 대지 면적은 667평으로 파악한다.

이 같은 작업의 결과 『사계리지세명기장』의 분석대상 373명 중 361명을 『사계리민적부』 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361명의 납세자는 『사계리민적부』에 등재된 316호 중 276호에 분포한다. 『사계리지세명기장』에 등재된 납세자와 『사계리민적부』 호주의 관계 분포는 <표 4>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표 4> 『沙溪里地稅名寄帳』 등재 納稅者의 『沙溪里民籍簿』 戶主와의 관계

민적부 호주와의 관계	납세자수	비고
호주	호주	211(58.45%)
	기타	4(1.11%)
	합	215(59.56%)
자손	자	42(11.63%)
	손	3(0.83%)
	기타	5(1.39%)
	합	50(13.85%)
부모	부모	58(16.07%)
	조부모	6(1.66%)
	합	64(17.73%)
형제	형제	19(5.26%)
	기타	3(0.83%)
	합	22(6.09%)
종형제		3(0.83%)
기타		7(1.94%)
총 합		361(100%)

지세 납부자와 『사계리민적부』 호주와의 관계는 호주 당사자가 납부자인 경우가 211건으로 가장 많다. 그리고 부부, 자손, 부모 등의 관계가 115건 정도였다. 이들 1촌 이내의 가까운 혈연관계가 대부분으로 90%를 차지한다. 형제 관계를 비롯한 그 외의 관계를 맺고 있는 납부자는 32건으로 10%의 분포를 보인다.

『사계리민적부』에서 호별로 재구성한 토지소유 현황을 검토할 차례이다.¹⁰⁾ <표 5>의 현황들은 『사계리지세명기장』의 주요 항목별 기록을 『사계리민적부』의 호에 따라 재구성한 후, 주요 항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들을 통하여 『사계리민적부』의 작성시기인 1920년경 사계리 호별 토지소유 현황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사계리민적부』에 등재된 316호 가운데 40호는 지세납부자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였다. 나머지 276호는 1명 이상의 지세납부자가 확인되는 토지소유 호였다. 지세납부자 가운데 『사계리민적부』에서도 확인되는 수는 361명으로 1호 당 평균 1.14명의 분포를 보인다.

10) 『사계리민적부』에 따른 호별 토지소유 현황 등 이 글에서 활용하고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拙稿(앞의 논문)에 별첨으로 그 전체를 수록하였다.

<표 5> 『沙溪里民籍簿』 戶別 토지소유 현황

① 납세자수별 호의 분포

납세자수		호수
0		40(12.7%)
1		205(64.9%)
2		58(18.4%)
3		12(3.8%)
4		1(0.3%)
합계	호수	316(100%)
	납세자수	361
평균 납세자수		1.14

② 소유 대지 필지수별 호의 분포

대:필지		호수
0		77(24.4%)
1		177(56.0%)
2		50(15.8%)
3		7(2.2%)
4		4(1.3%)
5		1(0.3%)
합계	호수	316(100%)
	필지수	319
평균 소유 대지 필지수		1.01

③ 소유 토지 전체 지적별 호의 분포

지적(백평)		호수
0		40(12.7%)
0~5		27(8.5%)
5~10		16(5.1%)
10~15		16(5.1%)
15~20		12(3.8%)
20~30		41(13.0%)
30~40		40(12.7%)
40~50		29(9.2%)
50~70		28(8.9%)
70~100		40(12.7%)
100~200		24(7.6%)
200~300		2(0.6%)
300 이상		1(0.3%)
합계	호수	316(100%)
	지적	1,288.1
평균 소유 토지 면적(평)		4.076

④ 소유 대지 지적별 호의 분포

지적(10평)		호수
0		77(24.4%)
0~10		50(15.8%)
10~15		48(15.2%)
15~20		51(16.1%)
20~25		38(12.0%)
25~30		19(6.0%)
30~50		23(7.3%)
50~100		8(2.5%)
100 이상		2(0.6%)
합계	호수	316(100%)
	지적	48.07
평균 소유 대지 면적(평)		152

⑤ 호의 토지소유 순위별 토지소유 현황

호의 순위	소유토지: 평(%)
1~31위(0~10%)	411,294(31.9%)
32~62위(10~20%)	247,862(19.2%)
63~93위(20~30%)	190,889(14.8%)
94~124위(30~40%)	137,473(10.7%)
125~155위(40~50%)	111,002(8.6%)
156~186위(50~60%)	88,201(6.8%)
187~217위(60~70%)	63,984(5.0%)
218~248위(70~80%)	31,475(2.4%)
249~276위(80~90%)	5,905(0.5%)
277위: 40호(90~100%)	0(0.0%)
316호 합	1,288,085(100%)

⑥ 호의 대지소유 순위별 토지소유 현황

호의 순위	소유대지: 평(%)
1~31위(0~10%)	15,557(32.4%)
32~62위(10~20%)	8,245(17.2%)
63~93위(20~30%)	6,566(13.7%)
94~124위(30~40%)	5,377(11.2%)
125~155위(40~50%)	4,628(9.6%)
156~186위(50~60%)	3,663(7.6%)
187~217위(60~70%)	2,758(5.7%)
218~239위(70~77%)	1,277(2.7%)
240위: 77호(78~100%)	0(0.0%)
316호 합	48,071(100%)

토지를 소유한 호 가운데 전체 토지소유 현황으로 가장 작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호는 대지 1필지, 45평만을 소유한 2513번지 이영근호였다. 2617번지 이정화호의 경우는 3명의 납세자가 대지 2필지를 포함하여 전체 38필지, 3만 810평을 소유하여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확인할 수 있는 전체 면적은 128만 8,085평으로 매 호당 평균 4,076평의 토지를 소유하였다.

전체 토지소유 순위에 따른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에 속하는 31개 호가 전체의 32%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위 62개 호, 20%로 확장했을 때는 전체 토지의 50% 정도를 보유한다. 상위 50%에 드는 155개 호는 전체의 85%의 토지를 차지한다. 나머지 15%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40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호가 나누어 가졌다.

대지의 경우 전체 316호 중 25%에 달하는 77개 호는 1필지의 대지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였다. 1필지의 대지만을 보유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177개 호였다. 가장 많은 필지수를 소유한 호는 2255번지 유문기호로 5개 필지의 대지를 소유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대지의 필지수는 319필지로 매 호당 평균 1.01필지를 나타낸다.

대지소유 현황을 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60%에 달하는 187호가 42평에서 250평의 면적에 분포한다. 가장 작은 면적을 소유한 호는 42평의 대지 1필지만을 소유한 3232번지 김이행호였다.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한 호는 2개 필지를 합쳐 1,349평의 대지를 소유한 2365번지 강만규호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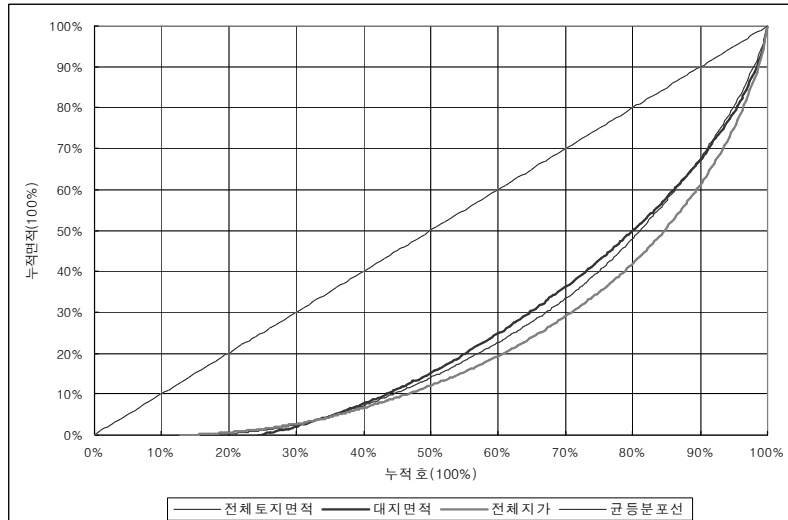
대지소유 순위에 따른 대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에 속하는 31개 호가 전체의 32.5% 정도 되는 대지를 소유한다. 상위 62개 호, 20%로 확장했을 때는 전체 토지와 마찬가지로 전체 대지의 50% 정도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50%에 드는 155개 호가 차지한 대지는 전체의 84% 정도이다. 나머지 16%는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77호를 제외한 나머지 84개 호가 보유한 대지이다.

<표 5>에서는 생략했지만, 『사계리민적부』의 호별 토지소유 집중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지가를 통한 분석이다. 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여 반영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 2>는 『사계리민적부』에 등재된 316호의 토지소유 집중도를 살펴보기 위한 로렌즈곡선이다.

<그림 2>의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체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가 다른 두 경우에 비해 집중도가 높게 나타난다.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가 0.5176,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가 0.5045인 반면, 전체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0.5653을 나타낸다. 역시 전체지가를 기준으로 한 경우가 가장 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상위층에 위치한 호들이 소유한 토지가 질적으로 보다 우월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상위층의 호들은 답과 대지를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토지를

많이 소유하였다.

<그림 2> 『沙溪里民籍簿』 戶別 토지소유에 대한 로렌츠곡선



2)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 元戶別 토지소유 현황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사계리민적부』에 등재된 호를 기준으로 호별 토지소유 현황을 구성하였다. 이어지는 작업은 그 결과를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의 원호별 기록에 따라 다시 분류하는 것이다.

『사계리민적부』와 1894년 호적중초는 25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자료의 기록을 통하여 호구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사계리민적부』에 기록된 성명과 부모 및 전호주의 성명, 출생년도와 혼인관계 등을 호적중초 기록과 비교하여 연결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호적중초와 『사계리민적부』에 등재된 호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 分戶와 合戶, 혼인 등으로 인한 호의 재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자료에 기록된 모든 구수를 대상으로 연결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무척 지난한 작업이다. 또한 혼인과 호의 재편 등으로 인한 복잡한 연결망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토지소유 현황의 분석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기준은 호적중초에 기재된 남성과 『사계리민적부』의 호주와의 관계이다. 물론 당사자, 부자관계, 祖孫관계가 일차적이며, 『사계리민적부』의 호주가 여성인 경우는 사망한 남편의 관계를 먼저 살핀다. 이상의 검토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호에 국한하여 다시 혼인관계, 즉 『사계리민적부』의 妻父, 外祖, 子婦 등과 호적중초 기록을 비교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 호를 대상으로 분명한 혈연,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호의 구성원을 비교하였다.

예를 들어 『사계리민적부』 1693번지 조권빈호의 경우, 호주 조권빈 당사자가 호적중초 1통 1호 조진경호의 손자로 확인된다. 1696번지 조정빈호의 경우는 부 조인민이 1통 1호 조진경호의 차자이다. 1694번지 조성국호의 경우는 조부로 추정되는 전호주 조인항이 1통 1호 조진경호의 질자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317번지 김관중호의 경우는 장인인 조인식이 1통 1호 조진경호의 질자로 확인된다.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 1통 1호 조진경호가 『사계리민적부』의 호와 연결되고 있는 이상의 상황을 예로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표 6>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 1統 1戶의 『沙溪里民籍簿』 戶別 연결 상황

호적중초				매개인			민적부	
통	호	호주	구수	호적중초 호주와의 관계	성명	민적부 호주와의 관계	번지	호주
1	1	조진경	38	손자	조권빈	호주	1693	조권빈
				손자	조기빈	호주	324	조기빈
				손자	조재빈	호주	1693	조재빈
				차자	조인민	부	1696	조정빈
				질자	조인곤	호주	316	조인곤
				질자	조인식	호주	314	조인식
				차질자	조인함	호주	1704	조인함
				질자	조인항	전호주	1694	조성국
				질자	조인곤	부	1699	조호빈
				질자	조인식	외조	2348	강만흡
				질자	조인식	처부	317	김관중

이상과 같은 작업의 결과 『사계리민적부』에서 확인한 316개 호 중, 39개 호를 제외한 277개 호와 1894년 호적중초의 원호들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사계리민적부』상 277개 호는 호적중초 103개 원호 중 10개 호를 제외한 93개 원호와 연결된다. 『사계리민적부』와 연결되지 않는 10개 원호는 移居 등의 사유로 사계리에서 絶戶된 것으로 간주하고, 원호의 분석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원호로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호는 『사계리민적부』 316개 호 중 277개 호와 호적중초 103개 원호 중 93개 원호이다.

앞서 『사계리민적부』와 『사계리지세명기장』의 내용을 통하여 『사계리민적부』의 호별 토지소유 현황을 산출하였다. 이제 그 결과를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의 원호별 기록에 따라 재분류함으로써 19세기 후반 원호의 토지소유 현황을 추정할 수 있다.¹¹⁾

이상의 과정을 통해 1894년 호적중초의 103개 원호 중 절호 10개 호를 제외한 93개 원호의 토지소유 현황을 추정하였다. <표 7>의 현황들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항목별 원호의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7>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元戶別 토지소유 현황

①원호의 민적부 분호현황

민적부 호수		원호수(%)
1호 유지		30(32.3%)
2호로 분호		20(21.5%)
3호로 분호		17(18.3%)
4호로 분호		7(7.5%)
5호로 분호		9(9.7%)
6호로 분호		4(4.3%)
8호로 분호		1(1.1%)
10호로 분호		2(2.2%)
11호로 분호		2(2.2%)
13호로 분호		1(1.1%)
합계	원호수	93(100%)
	민적부 호수	281*
평균 민적부 호수		3.0

* 합호된 4호는 중복 계산

②납세자 수별 원호 분포

납세자수	원호수(%)	
0	2(2.2%)	
1	25(26.9%)	
2	16(17.2%)	
3	16(17.2%)	
4	8(8.6%)	
5	9(9.7%)	
6	6(6.5%)	
7	2(2.2%)	
8	3(3.2%)	
9	1(1.1%)	
10	1(1.1%)	
12	1(1.1%)	
13	1(1.1%)	
15	1(1.1%)	
17	1(1.1%)	
합계	원호수	93(100%)
	납세자수	332
평균 납세자수		3.57

* 합호를 둘로 나누어 “5가 생긴 경우 0.5와 1.5는 1과 2로, 5.5와 10.5는 5와 10로 간주

③소유대지 필지수별 원호 분포

대:필지	원호수(%)	
0	7(7.5%)	
1	24(25.8%)	
2	16(17.2%)	
3	16(17.2%)	
4	10(10.8%)	
5	7(7.5%)	
6	5(5.4%)	
7	2(2.2%)	
8	2(2.2%)	
12	1(1.1%)	
13	2(2.2%)	
14	1(1.1%)	
합계	원호수	93(100%)
	필지수	291
평균 소유 필지수		3.13

* 합호를 둘로 나누어 “5가 생긴 경우 0.5(2호)와 1.5는 1과 2로, 3.5와 7.5 및 8.5는 각각 3, 7, 8로 간주

* 합호된 4호는 중복 계산

* 합호를 둘로 나누어 “5가 생긴 경우 0.5와 1.5는 1과 2로, 5.5와 10.5는 3과 10로 간주

- 11) 이상의 과정을 거친 대부분의 경우, 호적중초의 원호는 『사계리민적부』에서는 1호 이상의 호로 연결된다. 그러나 호적중초의 2개 원호가 『사계리민적부』의 1호로 수렴되는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4건 발견된다. 이 4건에 대해서는 일단 사유를 막론하고 모두 합호로 간주하였다. 현황의 계산을 위해서 『사계리민적부』의 호수를 계산하는 데에는 각각 1호로 중복하여 계산하였고, 나머지 토지소유 현황의 계산에는 『사계리민적부』의 해당호가 소유한 토지내역을 1/2로 계산하여 배분하였다.

④ 전체 토지소유 지적별 원호 분포

지적(천평)		원호수(%)
0		2(2.2%)
0~1		4(4.3%)
1~3		10(10.8%)
3~5		13(14.0%)
5~10		22(23.7%)
10~15		17(18.3%)
15~20		9(9.7%)
20~30		6(6.5%)
30~40		4(4.3%)
40~50		2(2.2%)
50~60		1(1.1%)
60~70		2(2.2%)
81		1(1.1%)
합계	원호수	93(100.0%)
	지적(평)	1,226,202
평균 소유 토지면적 (평)		13,185

⑥ 원호의 토지소유 순위별 토지소유현황

순위	소유토지: 평 (%)
1~9위(0~10%)	446,434(36.4%)
10~18위(10~20%)	217,648(17.7%)
19~27위(20~30%)	147,100(12.0%)
28~36위(30~40%)	116,371(9.5%)
37~45위(40~50%)	91,377(7.5%)
46~54위(50~60%)	69,900(5.7%)
55~63위(60~70%)	54,041(4.4%)
64~72위(70~80%)	40,815(3.3%)
73~81위(80~90%)	30,337(2.5%)
82~93위(90~100%)	12,179(1.0%)
93호 합	1,226,202(100%)

⑤ 대지 소유 지적별 원호 분포

지적(백평)		원호수(%)
0		7(7.5%)
0~1		9(9.7%)
1~3		28(30.1%)
3~5		18(19.4%)
5~10		23(24.7%)
10~20		4(4.3%)
20~30		4(4.3%)
합계	원호수	93(100%)
	지적(평)	45,062
평균 소유 대지면적 (평)		484.5

⑦ 원호의 대지소유 순위별 토지소유현황

순위	소유대지: 평 (%)
1~9위(0~10%)	15,403(34.2%)
10~18위(10~20%)	7,571(16.8%)
19~27위(20~30%)	6,329(14.0%)
28~36위(30~40%)	4,388(9.7%)
37~45위(40~50%)	3,599(8.0%)
46~54위(50~60%)	2,739(6.1%)
55~63위(60~70%)	2,132(4.7%)
64~72위(70~80%)	1,642(3.6%)
73~81위(80~90%)	984(2.2%)
82~93위(90~100%)	275(0.6%)
93호 합	45,062(100%)

우선 호적중초의 원호가 『사계리민적부』에서 분호한 현황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이 된 93개 원호는 총 277개 호로 분호하였다. 그 중 1호를 유지하는 원호가 30개 호, 2호로 분호

한 원호가 20개 호로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3호에서 8호로 분호한 원호는 38호로 40% 정도이다. 나머지 5개의 원호는 10호 이상으로 분호하였으며, 가장 많이 분호한 호는 18통 4호의 이화수호로 총 13개 호로 분호하였다.

원호의 납세자수 분포는 93개 원호에서 총 332명의 납세자수가 확인되어 원호 평균 3.57명의 지세 납부자수를 보여준다. 4통 5호 지경중호와 5통 5호 임영호호는 지세 납부자가 확인되지 않는 토지 미소유호로 확인되며, 나머지 91호는 모두 토지를 소유했다. 1명의 납세자가 확인되는 원호가 25개 호로 가장 많으며, 1~3명의 납세자가 확인되는 원호가 57호로 60% 이상을 차지한다. 4~10명의 납세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30호로 32% 정도를 보이고, 11명 이상인 경우도 4호가 존재한다. 가장 많은 지세납부자가 확인되는 호는 15통 1호 이계능호로 17명의 지세납부자를 확인할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면적을 살펴보면, 토지소유 호 중 가장 작은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호는 대지 1필지 67평만을 소유한 8통 1호의 강여규호였다. 1통 1호의 조진경호의 경우는 11명의 납세자가 대지 9필지를 포함하여 전체 128필지 8만 649평으로 가장 넓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93개 원호가 소유한 전체 토지면적은 122만 6,202평으로, 원호 평균 1만 3,185평의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에 속하는 9개 원호가 전체의 36%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8개 원호, 20%로 확장했을 때는 전체 토지의 54% 정도를 차지했다. 상위 50%에 드는 45개 원호로 확장하면 전체의 83%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2호를 제외한 나머지 46개 원호는 17%의 토지를 보유했다.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는 전체 93개 원호 중 7개 호로 확인된다. 1필지의 대지만 소유한 원호는 24호로 25.8%의 수치이다. 가장 많은 필지의 대지를 소유한 원호는 17통 1호 김연백호로 14개 필지의 대지를 소유하였다. 확인할 수 있는 대지의 필지수는 291필지로 원호 평균 3.13필지로 나타난다.

면적으로는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7호를 제외하고, 40% 정도인 37호가 300평 이하의 대지면적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작은 면적을 소유한 원호는 42평의 대지 1필지를 소유한 7통 1호 김이행호였다. 가장 넓은 면적을 소유한 원호는 역시 17통 1호 김연백호로 14개 필지를 합쳐 2,794평의 대지를 소유했다.

대지소유 순위에 따른 대지 소유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10%에 속하는 9개 원호가 전체의 34.2%에 달하는 대지를 소유한다. 상위 18개 원호, 20%로 확장했을 때는 전체 대지의 51%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50%에 드는 45개 원호는 전체 83% 정도의 대지를 보유한다. 나머지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7호를 제외한 나머지 40개 원호는 전체 대지의 17%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원호의 전체적인 현황은 앞서 살핀 『사계리민적부』 호를 기준으로 한 토지소유 현황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 토지소유 순위에 따른 토지소유 현황을 비교하면 차이가 눈에 띈다. 『사계리민적부』 316호 중 상위 10%의 호가 차지한 면적은 31.9%임에 비해, 호적중초 93호 중 상위 10%의 원호가 차지한 면적은 36.4%로 4.5% 정도가 늘어났다.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지만 이 차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사계리민적부』 호의 경우 전체 316호 중 12.7%에 달하는 40호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 호적중초의 원호는 93호 중 단 2호, 2.2%만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다. 토지 미소유호의 분포 자체가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 중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경우가 『사계리민적부』에 비해 10% 이상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토지소유 면적의 재조정 현상이 나타난다. <표 5>와 <표 7>의 현황들을 비교해 보면, 상위 10~70%까지는 『사계리민적부』 대비 호적중초 호의 토지소유 면적이 감소한 반면, 70~100%에 위치한 호들이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증가한다. 이것은 결국 토지 미소유호의 감소로 인한 재조정이라 하겠는데, 이와 같은 재조정 속에도 상위 10% 이내에 속하는 원호의 경우는 오히려 토지소유 면적이 증가한 것이다.

이와 같은 토지소유 현황의 모습에서 원호의 성격에 대한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하나는 호적중초에서 원호로 조정되는 대상은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한,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상태의 호였다는 추정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호적중초의 원호가 둘 이상의 가호가 편제된 것일 경우, 편제의 방향은 경제적 균등보다는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계속해서 이 두 가정을 포함한 원호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Ⅲ. 戶의 경제적 성격

1. 토지소유 현황을 통해 본 元戶와 경제력의 관계

호적중초의 원호와 경제력의 관계는 누호와의 비교를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호적중초 시기의 누호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해 이와 같은 비교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차선의 방법으로 호적중초가 아닌 민적부의 시기를 기준으로 원호와 그

렇지 않은 호의 경제력을 비교한다.

『사계리민적부』에 수록된 316호의 토지보유 현황은 이미 『사계리지세명기장』과의 비교를 통하여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가운데 277호가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의 103개 원호 중 93개 원호에 연결됨을 확인했다. 나머지 39호는 호적중초 원호와 연결되지 않는 ‘非元戶’이다.¹²⁾ 1894년 호적중초 원호와의 연결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이들 277호와 39호의 경제력을 비교함으로써 원호와 경제력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다.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사계리민적부』 39개 호의 배경은 사계리 외부로부터의 移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와 함께 1894년 당시 누호로 사계리에 거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사계리민적부』 상의 277호와 39호의 비교는 1894년 당시 사계리의 원호와 누호에 대한 간접적인 비교의 의미를 지닌다.¹³⁾

1894년 당시 누호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들 39개 호는 누호의 실체에 가장 근접한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황 증거에 따른 것일 뿐, 이들이 누호임을 보여주는 실증적 근거는 없다. 『사계리민적부』 277호와 39호의 비교는 원호와 누호의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선택한 원호와 비원호의 비교이다. 그 결과를 원호와 누호의 비교 결과로 간주할 수는 없으며, 단지 간접 비교의 개연성만을 지닐 따름이다.

여기서의 분석은 이와 같은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사계리민적부』 316호 중 277개 원호와 39개 비원호의 경제력을 검토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39개 비원호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8>은 이들의 토지소유 현황을 각 호별로 나타낸 것이다.

39개 비원호에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가 14개 호,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는 19개 호가 포함된다. 백분율로 따지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가 35.9%,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는 48.7%이다. 이는 앞서 살핀 『사계리민적부』 전체 316호나 1894년 호적중초의 93개 원호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2076번지 이정길호나 2626번지 이영빈호 등은 상당히 넓은 면적의 토지와 대지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12)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 원호와의 연결이 확인되지 않는 『사계리민적부』 39개 호를 ‘非元戶’라 칭한다.

13)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의 120여년에 걸친 누식년의 『사계리호적중초』에서 원호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존속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新戶로 호적중초에 등재되는 경우도 대부분 기존의 원호에서 分戶하여 성립한 경우가 다수이다(拙稿, 앞의 논문, 97-104쪽). 이는 제주지역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은 원호의 성격을 고려할 때, 비원호 39호가운데 상당수가 1894년 당시에 누호로 존재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표 8> 39개 非元戶의 토지소유 현황

민적부 번지	민적부 호주	납세 자수	전체 지적 (평)	토지 지가 (圓)	지적 (평)	지가 (圓)	필지	민적부 번지	민적부 호주	납세 자수	전체 지적 (평)	토지 지가 (圓)	지적 (평)	지가 (圓)	필지
271	현재일							2359	임자생						
1910	백숙	2	3237	16.99	114	4.56	1	2441	김명휴						
2067	신재규	1	1236	6.95	66	3.30	1	2474	김중복	1	1862	18.42	142	7.10	2
2069	유수근	1	312	3.84	67	3.35	1	2503	김기찬						
2072	고여관	2	2873	19.72	223	11.15	2	2529	김봉두	1	615	3.07			
2075	고치우	1	3056	14.00	129	6.45	1	2554	오태화						
2076	이정길	1	13285	93.88	578	28.90	2	2626	이영빈	1	12351	113.87	458	19.30	4
2077	윤상운	1	86	4.30	86	4.30	1	2637	이병진	1	811	6.75	43	2.15	1
2126	김귀겸	1	815	6.28	97	4.85	1	2651	신윤석	1	2672	13.14			
2130	김옥겸	1	2000	15.87	162	8.10	2	2711	송희근	2	489	4.14			
2148	강정생							2717	최신화	1	3364	29.24	111	5.55	1
2148	한중기							2718	김반석	1	85	4.25	85	4.25	1
2156	강정록	1	7523	44.13				2726	강갑추						
2255	문경춘	1	1189	2.92				2726	정방필	1	1103	9.80	158	7.90	1
2295	임승권	2	946	10.57	181	9.05	2	2739	윤응봉						
2300	황월출	1	217	5.91	80	4.00	1	2819	임경생	1	1104	9.12	80	4.00	1
2307	박양수							2836	홍봉옥	1	582	18.16	79	3.95	1
2316	임항인							2843	이영란						
2350	송일복							無	문영은						
2354	천재유	1	70	3.50	70	3.50	1	이상 합		29	61883	478.82	3009	145.72	28

이어서 39개 비원호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현황을 이미 살핀 『사계리민적부』 316호 및 호적중초 93개 원호와의 비교를 통하여 검토한다. <표 9>는 해당 현황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9> 『沙溪里民籍簿』 316戶의 元戶·非元戶別 토지소유 현황

호종 (호수)	납세자		전체 토지 (지적: 평)		전체 토지 (지가: 圓)		대지 (지적: 평)		대지 (지가: 圓)		대지 (필지수)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비원호 3호	29 (8.0)	0.74	61,883 (4.8)	1,587	479 (4.7)	12.28	3,009 (6.3)	77.15	146 (6.4)	3.74	28 (8.8)	0.72
전체 316호	361 (100)	1.14	1,288,085 (100)	4,076	10,152 (100)	32.13	48,071 (100)	152.12	2,286 (100)	7.23	319 (100)	1.01
원호 93호	332 (92.0)	3.57	1,226,202 (95.2)	13,185	9,673 (95.3)	104.01	45,062 (93.7)	484.54	2,140 (93.6)	23.01	291 (91.2)	3.13

먼저 비원호 39호가 『사계리민적부』 전체 316호에 대하여 어떠한 점유율을 보이는지 살펴본다. 39개 비원호는 전체 316호에 대하여 호수로는 12.3%에 해당한다. 나머지 87.7%는 호적중초의 원호 중 93개 원호에 연결되는 277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런데 전체 호수 대비 12.3%를 점하는 비원호가 납세자 수에서는 8%에 불과한 수치를 보여준다.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수치가 더욱 떨어져 지적과 지가를 막론하고 4.7~4.8%만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지의 지적과 지가를 대상으로 할 때는 6.3~6.4%로 약간 상승한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경우는 대지의 필지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 전체 8.8%의 대지 필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39개 비원호의 경우 전체적인 토지소유의 측면에서 전체 평균치에 밑도는 상태,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토지소유 상태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우선 호수에 비해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 수가 적었다. 그리고 토지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토지만을 소유하였다. 또한 전체 토지에 비해 대지의 수치가 약간 높다. 이것은 이들의 토지소유가 거주공간인 대지에 좀 더 비중을 둘을 의미한다. 대지 필지수의 경우는 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결국 이들이 소유한 대지가 평균적으로 협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토지소유에 있어 비원호의 열악성은 평균치를 검토하면 보다 분명해 진다. 납세자 수의 경우 전체 평균이 호당 1.14명임에 비해 비원호는 0.74명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대지 필지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반면 대지의 지적과 지가는 전체 평균이 152평과 7.23원임에 비해, 비원호는 77평과 3.74원으로 1/2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진다. 전체 평균 지적과 지가가 4,076평과 32.13원임에 비해, 비원호는 1,587평과 12.28원으로 1/2.5에도 미치지 못한다.

호적중초의 93개 원호와 비원호의 평균치가 보여주는 차이는 보다 심각하다. 납세자 수와 대지 필지수는 4~5배의 차이를 보이며, 대지의 지적과 지가는 6~7배, 전체 토지의 지적과 지가는 8~9배나 차이를 나타낸다.

호적중초의 원호와 『사계리민적부』의 비원호에 대한 비교는 물론 동일한 기준에 의한 비교가 아니다. 『사계리민적부』의 호를 자연 상태의 가호라고 가정했을 때 비원호는 가호를 분석단위로 하는 반면, 원호는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호를 이룬 다수의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를 『사계리민적부』의 호를 단위로 세분하여 비원호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즉 원호의 기준을 호적중초 93개 원호가 아니라, 이들 원호와 연결되고 있는 『사계리민적부』 277개 호를 기준으로 해서 39개 비원호와 비교하는 작업이다. <표 10>의 현황들은 『사계리민적부』 호를 기준한 277개 원호와 39개 비원호의 분포를 항목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0>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 기준, 『沙溪里民籍簿』 戶의 元戶·非元戶別 토지소유 현황 비교

① 원호와 비원호의 지세 납세자수 비교

지세 납세자수	원호	비원호
0	26(9.4%)	14(35.9%)
1	184(66.4%)	21(53.8%)
2	54(19.5%)	4(10.3%)
3	12(4.3%)	0(0%)
4	1(0.4%)	0(0%)
이상 합(호수)	277(100%)	39(100%)
전체 납세자수	332	29
평균 납세자수	1.20	0.74

② 원호와 비원호의 소유대지 필지수 비교

대지 필지수	원호	비원호
0	58(20.9%)	19(48.7%)
1	163(58.8%)	14(35.9%)
2	45(16.2%)	5(12.8%)
3	7(2.5%)	0(0%)
4	3(1.1%)	1(2.6%)
5	1(0.4%)	0(0%)
이상 합(호수)	277(100%)	39(100%)
전체 대지 필지수	291	28
평균 대지 필지수	1.05	0.72

③ 원호와 비원호의 전체 소유토지 지적 비교

지적(백평)	원호	비원호
0	26(9.4%)	14(35.9%)
0~5	21(7.6%)	6(15.4%)
5~10	11(4.0%)	5(12.8%)
10~15	12(4.3%)	4(10.3%)
15~20	10(3.6%)	2(5.1%)
20~30	39(14.1%)	2(5.1%)
30~40	37(13.4%)	3(7.7%)
40~50	29(10.5%)	0(0%)
50~70	28(10.1%)	0(0%)
70~100	39(14.1%)	1(2.6%)
100~200	22(7.9%)	2(5.1%)
200~300	2(0.7%)	0(0%)
300 이상	1(0.4%)	0(0%)
이상 합(호수)	277(100%)	39(100%)
전체 소유토지 지적(평)	1,226,202	61,883
평균 소유토지 지적(평)	4,427	1,587

④ 원호와 비원호의 소유대지 지적 비교

지적(10평)	원호	비원호
0	58(20.9%)	19(48.7%)
0~10	40(14.4%)	10(25.6%)
10~15	44(15.9%)	4(10.3%)
15~20	48(17.3%)	3(7.7%)
20~25	37(13.4%)	1(2.6%)
25~30	19(6.9%)	0(0%)
30~50	22(7.9%)	1(2.6%)
50~100	7(2.5%)	1(2.6%)
100 이상	2(0.7%)	0(0%)
이상 합(호수)	277(100%)	39(100%)
전체 소유대지 지적(평)	45,062	3,009
평균 소유대지 지적(평)	162.7	77.2

⑤ 원호와 비원호의 전체 소유토지 지가 비교

지가(圓)	원호	비원호
0	26(9.4%)	14(35.9%)
0~5	24(8.7%)	7(17.9%)
5~10	24(8.7%)	6(15.4%)
10~20	52(18.8%)	8(20.5%)
20~30	40(14.4%)	1(2.6%)
30~50	49(17.7%)	1(2.6%)
50~100	44(15.9%)	1(2.6%)
100~200	15(5.4%)	1(2.6%)
200 이상	3(1.1%)	0(0%)
이상 합(호수)	277(100%)	39(100%)
전체 소유토지 지가(圓)	9,672.70	478.82
평균 소유토지 지가(圓)	34.92	12.28

⑥ 원호와 비원호의 소유대지 지가 비교

지가(圓)	원호	비원호
0	58(20.9%)	19(48.7%)
2~4	23(8.3%)	7(17.9%)
4~6	39(14.1%)	5(12.8%)
6~8	43(15.5%)	3(7.7%)
8~10	30(10.8%)	2(5.1%)
10~12	31(11.2%)	1(2.6%)
12~15	25(9.0%)	0(0%)
15~20	18(6.5%)	1(2.6%)
20~30	6(2.2%)	1(2.6%)
30~40	2(0.7%)	0(0%)
40 이상	2(0.7%)	0(0%)
이상 합(호수)	277(100%)	39(100%)
전체 소유대지 지가(圓)	2,139.99	145.71
평균 소유대지 지가(圓)	7.73	3.74

<표 10>의 현황들을 통해 볼 수 있는 각종 결과들 중에서 전체 316호 대비 39개 비원호의 현황별 점유율은 이미 <표 9>를 통해서 살핀 바 있다. 『사계리민적부』 277개 원호의 점유율은 앞서 호적중초 93개 원호와 동일하다. 각 현황별 전체 호와 비원호의 평균치도 이미 비교한 바 있다. 비원호의 평균이 전체 호에 비해 낮았던 만큼, 그 부족분은 277개 『사계리민적부』 원호의 평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함으로써 채워진다. 다시 말해, 비원호가 『사계리민적부』 원호에 대해 보이는 평균치의 격차는 전체 호를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더욱 크게 벌어진다.

이때 증가하는 평균치의 격차는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다. 전체 평균과 『사계리민적부』 원호의 평균을 각각 ‘1’로 했을 때, 비원호의 수치는 약 0.02에서 0.04 정도가 떨어지는 수준이다.¹⁴⁾ 이렇게 작은 차이만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39개 비원호가 전체 호수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이 12.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체 평균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 39개 비원호의 비중이 277개 원호에 비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계리민적부』 상 277개 원호와 39개 비원호의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14) 39개 비원호가 전체 평균 및 277개 원호에 대하여 차지한 비율은 납세자의 수와 대지의 필지수에 있어 ‘1:0.65’(명)와 ‘1:0.71’(필지)에서 ‘1:0.62’(명)와 ‘1:0.69’(필지)로 0.03과 0.02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대지의 지적과 지가도 ‘1:0.51’(평)과 ‘1:0.52’(원)에서 ‘1:0.47’(평)과 ‘1:0.48’(원)로 0.04 정도만 감소하였다. 전체 토지의 지적과 지가 역시 ‘1:0.39’(평)과 ‘1:0.38’(원)에서 ‘1:0.36’(평)과 ‘1:0.35’(원)로 0.03의 차이를 보이는 데 불과하다.

차이는 각 범주별 분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우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의 분포에 있어, 277개 원호는 26호로 9.4%의 분포를 보임에 반해, 39개 비원호는 14개 호로 35.9%에 달하는 호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의 비중이 비원호가 원호에 비해 4배 정도 높았던 것이다.

범주별 분포의 불균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각 호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토지의 지가별 분포이다. 277개 원호의 경우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호를 포함하여 74호, 26.8%가 10원 이하의 토지만을 소유했다. 66.8%에 해당하는 185호는 10원에서 100원 이하의 토지를 보유했으며, 100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18호, 6.5%나 되었다. 반면 비원호의 경우는 전체 39호 중 69.2%인 27호가 10원 이하의 토지만을 소유했다. 10원에서 100원 이하의 토지를 소유한 호는 11호로 28.3%였고, 100원을 넘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는 단 1호만 존재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분포는 모든 항목에 걸쳐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즉 비원호의 경우는 원호에 비해 평균치에서 뿐 아니라, 개개의 호가 보여주는 구체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각 항목별 분포를 살펴보면 원호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는 비원호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2626번지 이영빈호의 경우 비원호로 간주했지만, 대지를 4필지에 458평이나 소유하였으며, 전체 1만 2,351평의 토지를 보유했다. 2076번지 이정길호의 경우는 대지 소유는 2필지이나 면적은 578평이었고, 소유한 전체 토지는 1만 3,285평으로 확인된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도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비원호가 반드시 최하층에 위치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이상의 원호와 비원호의 토지소유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개별 호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이상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원호와 비원호 간의 경제력에 따른 일정한 경향성은 분명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까지 살핀 것처럼 원호는 비원호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였다. 비록 1920년경의 『사계리민적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19세기 후반 호적중초의 원호와 경제력의 관계를 살필 수 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향 속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처지가 우월한 호가 우선적인 원호의 초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비원호가 자료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누호에 가장 근접한 존재였다는 점에서,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 원호로 등재된 호들은 누호로 잔존한 호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원호가 모든 누호에 대해 우월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경향성의 측면에서 원호가 누호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2. 戶主와의 관계에 따른 토지소유 현황 비교

다음으로 호주와의 관계에 따른 가호별 토지소유 현황을 검토한다. 이 분석은 호적중초의 원호가 둘 이상의 가호로 구성된 경우, 호주를 배출한 가호와 그렇지 않은 가호 사이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분석을 통하여 하나의 원호를 구성한 가호들 사이의 경제적 예측 등의 관계가 성립하는 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 분석 역시 호적중초 93개 원호에 해당하는 『사계리민적부』 277호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호주를 배출한 가호와 그렇지 않은 가호를 나누기 위해 1894년 호적중초의 호주에 대한 『사계리민적부』의 호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관계는 이미 『사계리민적부』의 호와 호적중초 원호의 관련성을 추적하는 기초로 활용하였다.

호적중초의 호주와 『사계리민적부』의 호주의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크게 여섯 범주로 분류하였다. 우선 혈연관계에 있는 경우를 ‘① 호주 및 호주의 자손, ② 형제 및 형제의 자손, ③ 중형제 및 중형제의 자손, ④ 재종 이상의 혈연관계’의 네 범주로 분류하였다.¹⁵⁾ 그리고 혈연관계가 아닌 경우, 호적중초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차입을 ‘⑤ 차입’으로 분류하였고, 『사계리민적부』에서 확인되는 附籍과 關籍 2건을 ‘⑥ 기타’로 각각 분류하였다.

6개 범주 중 ‘① 호주 및 호주의 자손’이 호주로 확인된 『사계리민적부』의 호를 1894년 호적중초의 원호에서 호주를 배출한 가호로 간주하고, 나머지를 그렇지 않은 가호로 분류하였다. 결국 ②~⑥의 범주는 호주를 배출하지 못한 가호를 원호 호주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5개 범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가호를 세부적으로 분류한 이유는 호주와의 관계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경제력의 격차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류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상속이 부모에서 친자녀로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일단 ⑤와 ⑥의 비혈연관계는 논외로 하고, ①~④의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몇몇 원호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우선 살펴볼 원호는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서 가장 많은 구수를 보여주는 1통 1호 조진경호이다. 조진경호는 38구로 구성되었는데, 기본적인 구성은 호주 조진경과 그의 자손 및 사망한 동생 조수경의 자손 두 범주로 구성된다. 즉 ①+②의 구성을 보여준다. 1894년 호적중초에 나타나는 호주와의 관계에 따른 구성원의 분포와, 『사계리민적부』 및 『사계리지세명기장』을 통해 확인되는 토지소유 현황을 나타내면 <표 11>과 같다.

15) 25년의 시간이 차이나는 만큼 1894년 호적중초의 호주에 대해서 『사계리민적부』에는 祖·父母나 伯·叔父母와 같은 상위 항렬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11>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 1統 1戶의 구성 및 토지소유 현황

1894년 호적중초 1통 1호 조진경호		민적부 번지 호주	남세 자수	전제지 적(평)	전제지 가(圓)	대지지 적(평)	대지지 가(圓)	대지 필지
① 호주 조진경(86), 처 임씨(74)								
술자 인호(54) 술부 김씨(55), 손녀(2)								
손자 권빈(11), 손부 김씨(16)		1693 조권빈	1	15,732	104.28	644	25.76	1
차자 인숙(고) 차부 김씨(50), 손녀(18)								
손자 기빈(8), 손부 양씨(15)		324 조기빈	1	15,852	130.41	428	17.12	1
차자 인민(45) : 차부 김씨(46), 손자 방빈(8), 손녀(2)								
손자 정빈(17), 손부 이씨(23)		1696 조정빈	1	5,960	27.46	166	6.64	1
차자 인식(30) 차부 김씨(41), 손자 재빈(5)		1693 조재빈	1	3,390	21.04			
② 제 수경(고), 제처 이씨(68)								
질자 인식(49) 질부 송씨(56), 종손자 혁빈(5) 질첩 김소사(49), 종손녀(2)		314 조인식	2	7,250	36.27	153	6.12	1
		2348 강만흠 (인식 외손)	1	4,340	29.53	156	7.80	1
		317 김관중 (인식 사위)	1	12,529	68.99	158	6.32	1
차질자 인항(41) 질부 문씨(44), 종손녀(5)		1694 조성국 (인항 손)	1	8,485	42.46	267	10.68	1
종손자 여빈(14) 종손부 지씨(16)								
차질자 인함(38) 질부 김씨(41), 종손자 석빈(8)		1704 조인함	1	5,589	33.18	162	6.48	1
질자 인곤(24) 질부 성씨(31)		316 조인곤	1	4,316	26.83	184	7.36	1
		1699 조호빈 (인곤차자)						
질녀 조씨(33): 질녀서 지운함 (48)								

<표 11>의 가계연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894년 호적중초 1통 1호 조진경호의 구성원들은 크게 ‘① 호주 조진경과 그의 자손’과 ‘② 弟 조수경의 자손’ 두 범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사계리민적부』 11개 호들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①의 범주에 속하는 호들이 4호이고 ②의 범주에 속하는 호들이 7호이다.

11개 호 각각이 보여주는 토지소유 현황은 두 범주에 속하는 호들 간의 경제적 연속 관

계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경제력 비교를 통하여 일정한 추정을 할 수는 있다. 우선 ①범주에 속하는 1693번지 조권번호와 324번지 조기번호는 다른 호들에 비해 상당히 많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1696번지 조정번호와 1693번지 조재번호는 ①범주에 속하면서도 ②범주의 호들보다 적은 토지를 소유했다. 특히 조재번호는 토지를 소유한 10개 호 중에서 가장 적은 토지를 소유한 호였다.

각 호가 소유한 토지를 범주 별로 통합하면, ①범주는 4만 934평, 283.19원이고 ②범주는 4만 2,509평, 237.26원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②범주에 속한 호 중 혼인으로 연결된 2348번지 강만흡호와 317번지 김관중호를 제외하면, ②범주의 토지소유 현황은 2만 5,640평, 138.74원으로 나타나 ①범주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결국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 1통 1호 조진경호에 있어, 호주를 배출한 가호에 해당하는 ①범주의 경제력이 그렇지 않은 가호인 ②범주의 경제력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가호간에 경제적 연속관계를 맺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②범주에 속하는 호들의 경제력은 ①범주 보다는 낮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범주에 속하는 7개 호의 경제력은 93개 원호에 연결되는 『사계리민적부』 277호의 평균에相当하거나 혹은 그 이상이었다. 따라서 이 경우 경제적 연속에 근거한 관계로 보기보다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소유한 호들이 혈연적 관계를 기준으로 하나의 원호를 구성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다음으로는 17통 1호 김연백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연백호는 25구로 구성되었으며,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할 때 가장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표 12>는 앞의 조진경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김연백호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김연백의 호는 크게 여섯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범주별 결합은 ‘①+③+③+③+④+④’로 나타난다. 이 중 외당숙모 김소사 및 그의 자 고광행이 속한 ④범주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범주들이 『사계리민적부』 9개 호에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9개 호의 토지소유 현황은 각 호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범주①에 해당하는 2741번지 김연백호의 토지소유는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호는 범주③에 속하는 2715번지 김시백호였다. 김시백호는 김연백호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했다. 결국 17통 1호의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적 연속에 기초한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조진경호와 김연백호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양상은 10구 이상으로 구성된 대부분의 대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결국 혈연관계를 지닌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로 호적중초에 등재된 많은 경우, 동일한 원호를 구성한 가호들이 경제적 연속의 관계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은 10구 이상의 대호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규모의 원호에게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12>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 17統 1戶의 구성 및 토지소유 현황

1894년 호적중초 17통 1호 김연백호	민적부 번지 호주	남 세 자수	전제지 적(평)	전제지 가(圓)	대지지 적(평)	대지지 가(圓)	대지 필지
① 호주 김연백(24): 처 송씨(31), 맏(11), 맏(6)	2741 김연백 2685 신용근 (연백 외손)	3	14,954	168.68	351	17.55	3
③ 중형 상백(29): 당질자 김위항(9), 종매(46)	2714 김상백 314 김경생 (상백 녀) 2475 이환중 (상백 사위)	1 1 1	8,123 3,213 79	119.80 25.71 3.95	457 363 79	22.85 14.52 3.95	2 1 1
③ 중부 찬현(66): 서숙모 양소사(51), 종매(4)							
중형 도백(31)	3203 김도백	1	3,746	19.23	174	8.70	1
중제 의백(11): 중제처 지소사(24)	3229 김무득 (의백 자)	1	8,256	71.02	227	11.35	1
③ 계부 찬식(61): 숙모 강씨(64)							
중형 시백(38): 중형수 김씨(39)	2715 김시백	2	20,259	246.19	863	43.15	4
중형 원백(32): 중형수 박씨(27), 당질녀(5)							
④ 재종형 영백(29), 재종제 기백(20), 재종매(8)	3235 김기백	1	1,451	6.96			
④ 외당숙모 김소사(76), 외재종제 고평행(20)							

6통 5호 유문기호는 5구로 구성된 원호로, 경제적 연속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이다. 이 호는 호주 유문기 부부와 族叔 유효정의 가족 3구가 하나의 원호를 구성하였다. 유문기 부부는 『사계리민적부』에 유문기호로, 유효정의 가족은 유효정의 아들 유문숙호로 각각 연결된다. 두 호는 모두 2255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지를 소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유문기이다. 따라서 족속 유효정의 가족은 거주공간을 유문기에 의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각 호의 토지소유 현황 역시 유문기호는 전체 2만 2,209평, 233.38원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한 반면, 유문숙호는 전체 평균에 상당히 못 미치는 856평, 4.12원에 불과하다. 이런 정황을 통하여, 1894년 호적중초를 기준으로 할 때, 족속 유효정의 가족은 호주인 유문기에 대하여 경제적 의존도가 상당히 컸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반면 호주를 배출한 가호와 그렇지 않은 가호 간에 경제력의 규모가 역전되는 사례 역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11통 2호 구운평호가 그런 경우이다. 구운평호는 호주 구운평과 모친, 처, 술자로 이루어진 가호와 당숙모, 재종제, 재종제처로 이루어진 가호가 하나의 원호를 구성했다. 호주 구운평의 가족은 『사계리민적부』에 구운평의 아들인 2076번지

구자현호로 연결되며, 당숙 가족은 재종제인 2499번지 구윤희호로 각각 연결된다. 각 호가 소유한 토지의 상태를 보면, 구자현호는 대지를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932평의 1원도 채 미치지 못하는 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구윤희호는 대지 1필지를 포함하여 4,759평, 25.89원의 토지를 소유했다.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로 등재되는 경우, 일부에서는 호주를 배출하지 못한 가호가 호주를 배출한 호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이 일부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존관계가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의 편제에 대하여 본질적 관계라고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많은 경우에 있어 호주 배출 여부에 따른 가호 사이에 경제적 연속 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불균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일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제력의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각 원호 별로 이루어지는 범주 분류를 무시하고, 전체 원호를 대상으로 범주별 경제력을 살펴보는 것은 이와 관련해서 보다 분명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13>은 277개 원호 전체에 대하여 호주와의 관계에 따른 항목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 13> 1894년 『沙溪里戶籍中草』 戶主와의 관계분류별 토지소유 현황

전체 합(호당평균)

호적중초 호주와 관계	민적부 호수	지세납 세자수	전체 소유 토지			소유 대지		
			지적(평)	지가(圓)	필지	지적(평)	지가(圓)	필지
①호주-자손	138	165 (1.20)	644,664 (4,671)	5,352 (38.78)	1,061 (7.69)	23,261 (169)	1,125 (8.15)	146 (1.06)
②형제-자손	83	99 (1.19)	344,317 (4,148)	2,626 (31.63)	622 (7.49)	12,436 (150)	604 (7.28)	88 (1.06)
③종형제-자손	26	31 (1.19)	116,120 (4,466)	895 (34.41)	176 (6.77)	4,365 (168)	215 (8.25)	26 (1.00)
④재종 이상	24	26 (1.08)	85,084 (3,545)	581 (24.21)	154 (6.42)	3,680 (153)	130 (5.43)	21 (0.88)
⑤차입	8	10 (1.25)	35,291 (4,411)	212 (26.54)	56 (7.00)	1,320 (165)	66 (8.25)	10 (1.25)
⑥기타	2	1 (0.50)	726 (363)	7 (3.42)	3 (1.50)	0 (0)	0 (0.00)	0 (0.00)
전체	281*	332 (1.20)	1,226,202 (4,427)	9,673 (34.92)	2,072 (7.48)	45,062 (163)	2,140 (7.73)	291 (1.05)

* 호적중초 상 2개 원호에 함께 연결되는 『사계리민적부』 4개 호는 호수에서는 중복하여 계산했다. 그러나 토지소유 현황에 대해서는 1/2로 계산하였으므로, 전체 현황의 평균을 구할 때의 호수는 실제 호수인 277호를 기준으로 하였다.

우선 <표 13>을 통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호와 납세자가 ①~④ 사이의 혈연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범주별 토지소유 현황은 전반적으로 ‘① 호주 및 호주의 자손’에 포함되는 호들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범주 ①에 해당하는 호들의 토지소유에 기초한 경제력은 다른 범주들에 비해 분명히 우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차이를 보인다. ‘② 형제 및 형제의 자손’의 범주나 ‘③ 종형제 및 종형제의 자손’의 범주에 속하는 호들의 경우, 범주 ①에 속하는 호들에 비해 그 평균치에서 얼마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④ 재종이상의 혈연관계’의 범주에 속한 호들의 경우 ①~③의 범주에 속하는 호들에 비해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경제적 예측을 논할 수 있을 정도의 격차는 아니었다.

흥미로운 것은 ‘⑤ 차입’의 범주에 속하는 『사계리민적부』 8호의 토지소유 현황이다. 이들이 소유한 전체 토지의 평균치는 범주 ②~③에 해당하는 수준이고, 대지로 국한했을 때는 오히려 이들을 뛰어넘어 범주 ①과 대등한 수준을 보여준다. “借入”이 타인 소유의 가옥을 빌어 사는 것을 의미함을 고려하면, 이들이 보여주는 토지 및 대지소유 현황은 상당히 의외이다.

여기서 <표 13>에 나타나는 수치를 ‘차입’전체의 경제력으로 간주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1894년 호적중초에 차입으로 존재했던 다수가 이미 『사계리민적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의 103개 원호, 939명의 등재 인원 중에서 차입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10개 원호에 걸쳐 분포했다. 가족집단으로 분류하면 12개 가계였고, 인원은 28명으로 전체의 약 3%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사계리민적부』에서는 이들 12개 중 5개 가족집단만 존속하였으며, 이들이 『사계리민적부』상 8개 호를 구성했던 것이다. 8호 전체의 구성원은 1921년 당시 32명으로, 전체 1,670명에 대해 1.9%에 불과한 수치였다. 이와 같은 존속상태를 고려할 때, 차입은 결국 경제적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¹⁶⁾

이제까지 살핀 동일 원호 내 가호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일부의 원호에 대해서는 호주 배출 여부에 따른 가호 사이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원호에

16) 호적중초에 차입으로 등재된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다. 1894년 호적중초의 6통 3호 이봉의 호에 차입으로 등재된 강종문과 그의 자녀 4명의 경우, 『사계리민적부』를 통해서도 2496번지 강문희호와 2656번지 강위흥호 및 2296번지 강제흥호의 3호에 걸쳐 확인된다. 결국 강종문 가계 하나가 『사계리민적부』의 차입 8호 중 3호를 차지했던 것이다. 강문희 등 3호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는 상당한 양이었다. 3호를 합쳤을 때, 전체 1만 7,255평, 116.35원에 달하는 토지를 소유했다. 대지의 경우는 4필지, 478평으로 23.9원의 액수였다. 반면 나머지 차입의 경우는 모두 평균치를 상당히 밑도는 수준의 토지소유 상태를 나타낸다. 결국 차입 8호의 토지소유 현황 평균치를 끌어올린 것은 전적으로 강문희 등 3호의 경제력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체 차입의 경제적 저열함이 상당부분 은폐되었다.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서 확인되는 동일 원호를 구성하는 가호들은 대부분 혈연관계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혈연관계의 경우, 경제적 의존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다수의 경우가 존재했다. 심지어 일부는 호주를 배출하지 못한 가호의 경제력이 호주를 배출한 가호에 비해 우월한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서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를 구성하는 경우, 원호 내의 가호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둘 이상의 가호로 구성된 원호는 거의 대부분 혈연적 관계를 기초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일반적인 모습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기반을 갖춘 가호 간의 결합이었다.

3. 元戶 抄定에 따른 토지소유 현황의 변동

마지막으로 자연 상태의 가호가 일정한 편제의 과정을 통하여 호적중초에 원호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경제력이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한 가정에 기초하여, 『사계리민적부』 316호를 자연 상태의 가호로 간주, 이들이 1894년 호적중초에 103개 원호로 등재되면서 나타나는 경제력의 재편상황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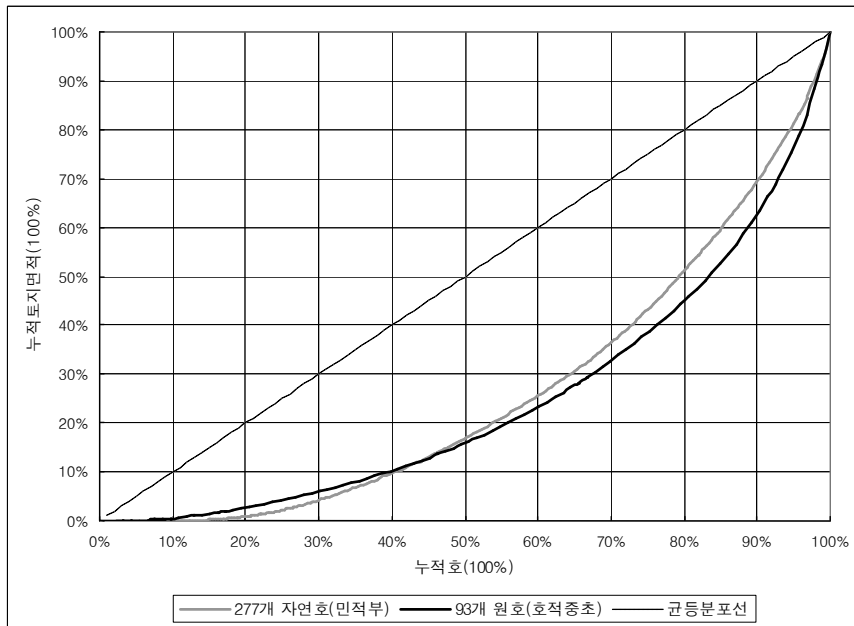
이 분석에 앞서 기본 비교대상을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우선 『사계리민적부』 316개 가호를 기준으로 39개 비원호를 제외한 277호가 호적중초 103개 원호 중 93호에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호적중초의 93개 원호와 『사계리민적부』의 277개 호가 비교대상에 포함된다.

문제는 누호로 존재할 수도 있는 39개 비원호이다. 이들 39호가 어떠한 방식으로 원호와 관련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석은 일단 논외로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분석은, 호적중초의 원호에 연결되는 277개 『사계리민적부』 호들과 그들의 편제 결과라고 가정한 93개 원호와의 비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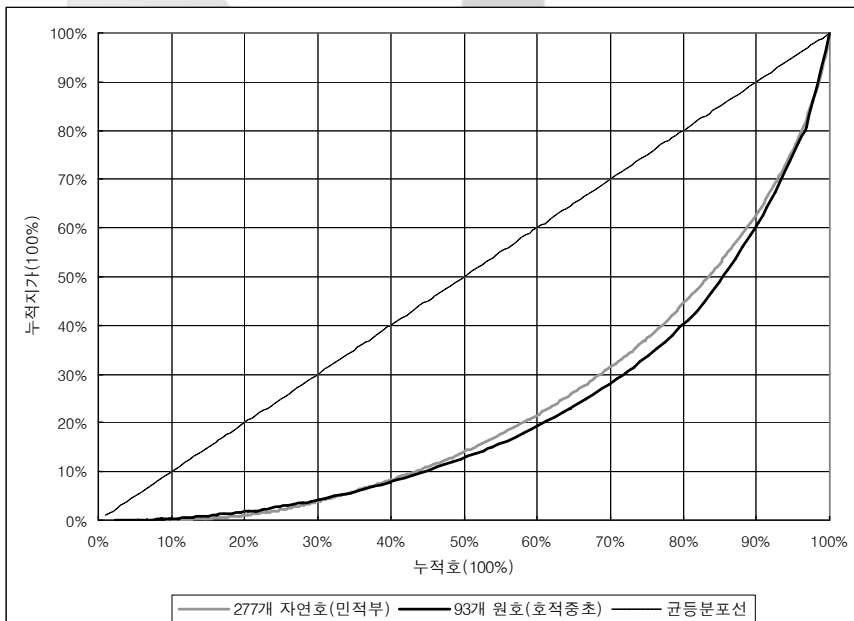
『사계리민적부』 277호와 호적중초 93개 원호의 경제력 분포에 대해서는 이미 <표 7>과 <표 10>을 통해 살핀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전체적인 윤곽은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는 277개 가호가 93개 원호로 편제된 후의 분명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소유한 토지 전체의 지적과 지가만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사계리민적부』의 277개 가호임과 동시에 호적중초의 93개 원호에 해당하는 호들이 소유한 토지의 총 지적은 122만 6,202평이고, 총 지가는 9,673원이었다. 다음의 <그림 3>과 <그림 4>의 두 그래프는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277개 자연가호와 93개 원호의 지적과 지가에 대한 로렌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 自然戶(『沙溪里民籍簿』 277戶)와 元戶(『沙溪里戶籍中草』 93戶)의 토지
소유 로렌츠곡선 1 (地積)



<그림 4> 自然戶(『沙溪里民籍簿』 277戶)와 元戶(『沙溪里戶籍中草』 93戶)의 토지
소유 로렌츠곡선 2 (地價)



두 그래프를 통하여 자연가호로 가정한 『사계리민적부』 277호와 호적중초 93개 원호에 나타나는 토지소유의 집중도를 분명히 살필 수 있다. 각 그래프에서 보이는 두 곡선간의 차이는 호적중초에 원호로 편제되기 이전과 이후의 토지소유 집중도의 차이를 의미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네 곡선, 즉 편제 이전인 277개 가호의 토지 지적과 지가 및 편제 이후인 93개 원호의 토지 지적과 지가를 나타내는 곡선이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지적과 지가를 기준으로 편제 이전의 가호와 편제 이후의 원호를 함께 나타냈을 때, 가호와 원호는 분명히 집중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그것은 지가에 비해 지적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토지의 지적에 있어, 하위 40% 이하에 속하는 호까지는 가호에 비해 원호가 보다 균등한 토지소유를 나타낸다. 그러나 40% 선을 넘어서면서 그 집중도는 역전된다. 즉 자연 상태의 가호에 비해 원호에게서 집중도가 보다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편제된 후의 원호가 자연 상태의 가호보다 불균등한 토지소유 양상을 보임을 의미한다.

40% 이후에서 나타나는 불균등의 심화는 이전의 균등성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각각의 지니계수를 보면 자연 상태의 가호로 가정한 『사계리민적부』 277호의 경우는 0.4802로 나타나는 반면, 93개 원호의 경우는 0.5125로 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¹⁷⁾

호적에 등재된 원호가 실재하는 가호에 대한 일정한 편제의 결과물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상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적어도 1894년 사계리에서 토지소유를 기준으로 할 때, 원호의 편제는 경제력의 균등이라는 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이루어졌다. 277개 가호의 편제 결과인 93개 원호는 편제 이전에 비해서 토지소유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것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편제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만약 논의에서 제외한 비원호 39호가 경제력이 열악한 원호에 편제된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불균등의 심화현상은 일정 정도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 39개 비원호가 소유한 토지의 지적과 지가는 전체 대비 5%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이들이 소유한 경제력의 규모는 처음부터 호적중초 상 원호의 경제적 균등을 담보할 만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원호의 편제에 있어 분명한 경향성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의 원호가 자연 상태의 가호의 편제 결과라고 가정할 때, 편제는 경제적 균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떠한 형태의 편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오히려 경제적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설혹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불균등성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원호가 편제되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17) 참고로 지가에 대한 각각의 지니계수는 『사계리민적부』 277호가 0.5365, 호적중초 93개 원호가 0.5616이다.

IV. 결론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하여 1894년 제주 대정현 사계리의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의 경제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비록 1920년 무렵에 작성된 민적부와 지세명기장의 기록들을 토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이상의 분석은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의 경제적 성격에 대한 경향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호적중초에 원호로 등재된 가호들은 그렇지 못한 가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호적중초에 등재된 다수의 원호들은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로 등재된 것이었으며, 이 경우 경제적 의존에 근거한 수직적 관계보다는 독립적인 경제력을 소유한 가호들이 혈연을 매개로 결합한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셋째, 둘 이상의 가호가 하나의 원호로 편제되어 등재되는 경우에 있어, 편제는 경제력을 균등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균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894년 사계리 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들의 이와 같은 경제적 성격은 조선 전역이 아닌 제주도의, 그것도 19세기 후반의 원호에 대한 규정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여기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1894년 『사계리호적중초』에 등재된 원호의 모습은 19세기 전체에 걸쳐 제주에서 진행된 平役米와 還政의 운영 등 호구를 대상으로 하는 부세수취를 둘러싼 관과 민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원호의 성격은 더 나아가 제주의 특수한 가족제도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¹⁸⁾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듯이 조선시대 호적의 작성은 국역체제와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지닌 국가였으며, 호적의 작성과 부세의 수취 역시 중앙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실제 호적의 작성은 각 郡縣을 단위로 수행되었으며, 부세수취역시 일정한 지역적 특성이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호적과 부세의 지역성으로 말미암아 각 호적자료에 등재된 원호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다양한 원호의 모습들 속에서 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호적 이외의 보다 다양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분석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력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관습, 동리간의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호적대장의 전산화 등과 함께 한 연구 성과들은 호적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난한 작업이 되겠지만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원호의 성격은 물론 호적연구와 조선

18) 19세기 제주의 호적중초를 통하여 제주의 부세운영과 그에 대한 민의 대응을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拙稿(앞의 논문)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대 사회상에 대한 풍부한 성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 C I

○ 투고일 : 2007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월 27일.

참고문헌

자료

- 『濟州大靜縣沙溪里戶籍中草』(제주도 남제주군 사계리사무소 소장;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6).
- 『沙溪里民籍簿』(제주도 남제주군 사계리사무소 소장).
- 『沙溪里地稅名寄帳』(제주도 남제주군 사계리사무소 소장).

논저

- 김건태, 「朝鮮後期 戶의 構造와 戶政運營 -丹城戶籍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김동진, 「朝鮮後期 濟州地域 戶籍中草의 實態와 그 性格」, 『역사민속학』 20, 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 림학성, 「조선후기 경상도 彦陽지역 ‘主挾’型 家戶의 族的 결합양태 -1861년도 彦陽戶籍의 사례 분석-」, 『國史館論叢』 100, 2002.
- 손병규,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 -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의 사례-」, 『대동문화연구』 5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5.
- _____, 「한말·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과약 -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대동문화연구』 5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6.
- 심재우,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호적대장 연구의 과제」, 『역사와현실』 62, 한국역사연구회, 2006.
- 이영훈, 『朝鮮後期 社會經濟史』, 한길사, 1988.
- _____, 「『淸州牧主戶成冊』과 主戶의 性質」, 『古文書研究』 23, 한국고문서학회, 2003.
- _____, 「朝鮮時代의 主戶-挾戶關係 再論」, 『古文書研究』 25, 한국고문서학회, 2004.
- 이창기,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9.
- 정지영, 「17·8세기 丹城戶籍에 기재된 戶의 성격」, 『경제사학』 32, 경제사학회, 2002.
- 정진영, 「18세기 호적대장 ‘戶’와 그 경제적 기반 -1714년 대구 租岩坊의 호적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9, 한국역사연구회, 2001.
- _____, 「조선후기 호적 ‘戶’의 編制와 성격」, 『大東文化研究』 4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2.
- _____, 「조선후기 호적대장 ‘호’의 편제 양상 -〈제주 대정현 하모슬리 호적중초〉(1843~1907)의 분석-」, 『역사와 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_____,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大東文化研究』 42,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최재석, 『한국가족연구』, 민중서관, 1966.

허원영, 『19세기 濟州島의 戶口와 賦稅運營』,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현용준, 「家族」, 『濟州道 文化財 및 遺蹟 綜合調査報告書』, 제주도, 1973.

호적대장 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3.

K C I

Abstract

Household's economic feature shown in Hojeokjungcho of Jeju in the late 19th century

Heo, Wonyoung*

This study is to examine household recorded in *Jejudo Daejeonghyun Sagyeri Hojeokjungcho* (census register) in 1894 from an economic aspect. *Sagyeri Minjeokbu*(household register) and *Sagyeri Jisemyeonggijang*(register of land-taxpayers) around 1920 are made the use of in this job.

The household's economic feature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onho(household of census registers) is disposed to be superior to non-Wonho in economics. Second, most of Wonho on the same record in Hojeokjungcho are composed of families related by birth. In this case, each family earns their own living. Third, the union of families deepened economic discrimination of Wonhos.

This result would rather represent the specific situation of Jeju in the 19th century than that of Chosun overall. It was the creature of the da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ver taxation of Jeju.

Keyword : *Sagyeri Hojeokjungcho*(census register), *Sagyeri Minjeokbu*(household register), *Sagyeri Jisemyeonggijang*(register of land-taxpayers), household, Wonho (household of census registers)

* Researcher, Jangseogak